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27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김용태 · 서천호 · 박준태
김성원 · 배준영 · 이종배
강명구 · 우재준 · 김승수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제22조의2제3항 · 제4항 및 제32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을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로 한다.

③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용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2. (생 략)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의2. 4. (생 략) ② (생 략)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u>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출입국관리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의2.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④ ----- <u>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u> -----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u><신설></u> <u>9. · 10. (생략)</u> ② (생략)	----- ---. 제32조(과태료) ① ----- ----- ----- -----. 1. ~ 8. (현행과 같음) <u>9.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용자</u> <u>10. · 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u> ② (현행과 같음)
---	--